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이 태 언**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범죄의 성격
 - 1. 국제범죄의 의의
 - 2. 국제형법의 특성
- III. 국제조직범죄의 특성과 현황
 - 1. 국제조직범죄의 특성
 - 2.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 3.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성
- IV. 국제조직범죄의 대책
- V. 결 론

I. 서 론

범죄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려는 노력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것으로 범죄란 사회발전의 역기능적 부산물로서의 반사회적인 행태인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 수법이나 내용이 끊임없이 변화되어

* 이 논문은 1999년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추계학술세미나의 발표논문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왔다. 2차대전 전만해도 국제범죄란 개념은 실감이 나질 않아 범죄는 각국의 국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자들을 인류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한 전범 재판소가 도쿄와 뉴런베르크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일본이나 독일의 전쟁원흉들을 처단하게 되면서 특히 UN이 조직되어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치됨으로써 인류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에 의해 각종 범죄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2차대전의 영향으로 국가간에 국경을 넘어,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급격히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대전후 장기간 냉전체제와 신생독립국가 상호간의 독립투쟁의 과정,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 국가간의 무역전쟁, 개인의 도덕적 무감각 현상 등이 증대되면서 범죄의 양상이 변하게 되었는데 국내적으로는 조직화·광역화·지능화·흉폭화·기동화 정보화 되었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국제화·다국적화·공용화·우주화되어 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범죄들을 국내적인 문제로만 안이하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간에 공통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국제성 범죄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세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터넷에 의해 이미 국경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국가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무역제도의 발전으로 각국이 당면한 경제적 실익 때문에 일찌감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국제간의 범죄문제에 있어서는 범죄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국제범죄의 억제를 위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각국의 법제가 달라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확실치 않았다. 국제범죄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주권의 보호라는 개별적인 가치보다 국제사회전체의 공익보호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

다. 국제사회의 복잡한 매카니즘속에서 인류적 차원에서 복지며 인권·평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이 협력함으로써 국제범죄를 방어하는 영속적이고 이상적인 국가공동체·지구공동체를 구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91년 9월에 UN에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되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는 무역에 의지하는 바가 커서 세계 11위권의 무역대국으로서 이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있다. 우리국민의 해외이주뿐 아니고 이미 국내에서도 60만명 정도의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해외여행객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국제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날이 갈수록 한국국적을 가진 자들이 세계각국에서 저지른 범죄나 한국에서의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등의 국제성을 띤 범죄들이 적지 않으며 특히 마약이나 밀수테러 등 국제적인 조직범죄적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범죄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찰한 후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II. 국제범죄의 성격

1.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의 의의 및 내용

국제범죄란 전쟁 등의 침략행위, 무력으로 시민을 지배하거나 대기나 해양오염 등 인류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서 국제범죄로 규정하여 각국이 보편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는 해적행위, 해저전선의 파괴행위, 평화에 관한 죄, 인도에 관한 죄, 국제테러 등이 있다.²⁾ 국제범죄는 성격상 범죄의 주체·객체가 국제성이나 國越性을 가지는 것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규제에 있어 국내범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할 뿐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각국간의 교역의 증대로 지역국가간에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인적교류가 증대되고 외국 문화유입이 가속화되면 의식이 국제화됨으로써 국제범죄는 증가 일로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해외여행이 빈번하여 외국사정을 비교적 잘 알게 되어 외국을 범죄의 대상지 뿐 아니라 은폐지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므로 국제성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원활한 협력이 시급한 형편에 있다.

국제범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

- ① 집단살해범과 같이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인한 범죄
- ② 해적 행위와 같이 범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즉각적으로 체포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 ③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하는 경우처럼 모든 국가에 피해를 가져 오지만 범인이나 증거의 포착이 쉽지 않는 범죄
- ④ 비자치지역의 국민, 위임통치 또는 신탁통치 지역의 주민처럼 그 수혜자가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창설해주는 법원칙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UN국제법 위원회가 정한 국가책임에 관한 조문안(제1부)에서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중에서 그 위반 정도가 증대한 것은 국제범죄라 하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국제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침략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증대한 위반행위
- ② 힘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금지와 같은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2) 이병조, 이종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4, pp.244-245

3) Text i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part2, pp.30-34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의무의 중대한 위반행위 ③ 노예제도, 집단살해 및 인종격리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인간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④ 대기권이나 해양의 대규모 오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인간 환경의 수호 및 보전을 위한 국제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이 다소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국제법위원회가 구체화하여 UN총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범죄를 ①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② 간섭, 식민지 지배 ③ 집단살해 ④ 인종격리 ⑤ 조직적인 대규모의 인권침해 ⑥ 중대한 전쟁범죄 ⑦ 용병의 모집, 자금의 제공, 훈련 ⑧ 국제적 테러리즘 ⑨ 마약의 불법거래 ⑩ 고의적이며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다.⁴⁾

국제범죄이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가 두 나라 이상의 형법과 형사재판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국민의 국외범에 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를 국내형법에서 처벌하는 것인데 즉,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본여자를 강간한 뒤 귀국한 경우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인 일본 여자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하고 또 수사과정에 있어 증거수집이나, 재판단계에 있어 증인소환 등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협력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피의자가 귀국을 하지 않고 범죄지인 미국에서 체포된 경우나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 인도된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 형법에 의해 처벌이 될 것이다. 다만 내국인이 외국에서 형을 받고 귀국한 경우 우리 형법이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자국민의 국외범은

4) Louis Henkin, Richard Crawford Pugh,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3rd ed, 1993. p.388.

5) 형법 제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혐의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자

실제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범죄지의 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형법도 처벌할 수 없다. 즉, 한국의 유부남이 일본여자와 간통을 한 경우 일본에서는 간통죄를 별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자가 귀국한 뒤 그 처가 일본에서의 간통행위를 이유로 고소하게 되면 일단 간통죄로 문의될 수는 있으나 일본 정부가 순순히 협력하지 않을 것이므로 강제조사를 할 수 없게되어, 더욱이 일본에서는 간통죄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협력할 리가 없어 남편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2) 외국인의 국외범의 경우이다.

일본인이 미국에서 한국의 항공기를 납치한 경우 한국은 보호주의 차원에서 일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3) 국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경우에도 공범이나 증거물이 외국에 있을 경우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조제한 마약을 미국의 주문자에게 배달하려다가 김포공항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주문자는 공범이므로 한국 형법이 관여할 수 있다. 국제형법에서 국제범죄로 보고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이 22개이다.⁶⁾

① 외국침공행위 ② 전쟁범죄 ③ 무기의 불법사용 및 배치 ④ 인도에 반하는 범죄 ⑤ 집단살해 ⑥ 인종차별 및 분리 ⑦ 노예 및 관련범죄 ⑧ 고문 ⑨ 불법의료실험행위 ⑩ 해적행위 ⑪ 항공기 납치 행위 ⑫ 국제적 보호대상 인물에 대한 폭력 협박 행위 ⑬ 민간인 인질납치 ⑭ 마약범죄 ⑮ 음란물의 국제거래 ⑯ 국유재산의 파괴 및 절취행위 ⑰ 환경파괴 행위 ⑱ 핵물질 절취행위 ⑲ 우편물 불법사용행위 ⑳ 해저케이블 교란행위 상품위조 행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죄 등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범죄는 점차 늘어갈 것이 분명한데 이들 범죄들은 국

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국민의 국외범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6) 金周德, 국제형법, 육서당, 1997, pp.22-23.

내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국내형법으로서 처벌하기 곤란한 것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제범죄로 보고 있는 범죄의 유형은 크게 i) 국제조직범죄 ii) 국제테러리즘 iii) 주한 외국인 범죄 iv) 자금세정 범죄 v) 출입국관리법 위반 vi) 주한 미군범죄 vii) 국제환경범죄 등인데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직범죄를 취급하고 있다.

2. 국제형법의 특성

국내 형법이 범죄와 형벌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규범이라고 하여 국제형법(internationales Strafrecht)을 국제범죄에 관한 형벌이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제형법은 개념상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국제형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형법에 관한 개념 자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국제범죄 내지 국제형법은 i) 국제법에 있어서의 형법적인 내용 ii) 국내형법에 있어서 국제법적 내용을 가진 것 등을 상호보완 내지는 동시존재성의 입장에서 형상화한 것인데 국제법적인 것과 국내법적인 상이한 두 법원리가 결합된 혼합적 성격(a hybrid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criminal Law)을 가진다.⁷⁾ 국제범죄를 규율하는 국제관계법에도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협약이나 조약 등에도 국제간의 범죄에 관한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국내형법에도 외국인 범죄나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보호주의에 입각한 국제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형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국제형법은 국내형법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할 국제법적 준칙 또는

7) 山本草二, 國際刑事法, 三省堂, 1991, p.51.

형법이 해당 외국에게 형사범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준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최근 인신매매나 마약, 유해약물, 위조통화 등의 수출입 및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고 있는데 조약 체결국가들은 이들 범죄를 처벌하는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적절하게 처벌하도록 조약의 내용에 협력 할 의무가 있다. 국제관계법(국제법)은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의무를 성실히 다할 때에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약이나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해당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제형법을 넓게 이해하는 바버(Donnedieu de Vabres)는 i) 국제범죄에 있어 외국의 재판권을 국내형사재판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즉, 국내형사재판권을 국제 관할적인 것으로 내어놓을 것인가하는 문제 ii) 국내 형법의 적용에 있어 장소와 사람의 범위에 대한 일정범위는 국제형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iii) 범인인도나 외국판결의 집행방법의 문제는 국제형법보다는 국제형사소송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⁹⁾

3) 국내형법의 장소적 효력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 적용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슈바르겐(Schwargen-berger)은 국제형법에서 취급해야 할 내용을 다음 6가지로 보고 있다.¹⁰⁾ i) 국내형법에서의 장소적 범위

8)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모델이 UN의 해당기관에서 제정되어 각국 형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형법은 국내형법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문제만 관할하여 국내형법과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성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9)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준칙을 위해 국제형사소송법이 필요하다. 국제성 범죄는 형법적인 처벌 보다는 이를 포착하여 수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인터폴 등이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범죄 수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개별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수사지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10) 김주덕, 전계서, pp.27-28.

를 국제형법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i)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내형법에 있어서의 국제 형법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iii)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내형법에 대한 국제 형법의 시각 iv) 문명국가에 공통하는 국내형법에 대한 국제형법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v) 국내형 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 협력조항을 국제형법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vi) 국제형법이라는 언어적 의미가 갖는 실질적 의의는 무엇인가.

국제형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만 국제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형법과 국내형법의 상호관련성이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실제로는 국제형법은 각국의 국내형법의 장소적 적용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국은 주권국가이므로 외국의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국제형법은 이런 의미에서 국내형법의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형법을 형법 적용범이란 의미로 사용한 사람은 벤담(Jeremy Benthan)¹¹⁾이 최초인데 이같은 입장은 1차대전전까지 국제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국제형법의 개념이 국내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부터 형사국제법과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 각종의 국제형사 사건의 협력에 관한 법영역에 이르기까지 국제형법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보다 넓게 ① 국내형사재판권의 외국 형사재판권과의 관계, ② 한 국가가 정하는 장소나 사람에 대해 국내형법이 어떻게 수용·적용 할 것인가, ③ 외국에서의 형사판결의 효력을 국내 형사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국제형법을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형법의 특성을 범죄와 형벌에 관한 국제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하면서 국내형법의 장소적·인적적용

11) 벤담(1748-1832)은 공리주의 법학자·철학자로 법은 생활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실익이 없는 법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형법은 가상의 것으로 국내형법의 적용의 확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범위나 외국형사판결의 국내에 있어 효력과 집행의 문제뿐 아니라 외국 형사절차의 이관에 관한 문제, 범죄인 인도, 형사사범의 국제간에 있어 공조의 문제, 형사재판의 국제간에 있어 관할의 문제 그리고 치외 법권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넓게 이해하고 있다. 국제형법과는 달리 글레저(Glaser)에 의해 형사국제법(Volkerstrafrecht)의 개념이 제기되었는데¹²⁾ 형사국제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2차 대전 후 전쟁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뉘른베르크¹³⁾와 도쿄에 국제군사재판법정(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at Nurnberg)가 설치되었고 1945년에 조직된 UN에서도 그 중요기구로 국제사법법원이 설치되면서 이곳에서 처리해야 할 재판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이다. Glaser 같은 이는 국제사회라는 차원에서의 형사국제법은 국내 차원에서의 국내형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내형법이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법의를 규율하는 것처럼 형사국제법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법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국제법은 성질상 국내형법보다는 국제법과 결합성이 크고 法源(법원)을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본다. 형사국제법이 형법과 구별되는 특수성은 i) 국제범죄나 국제법규위반의 행위는 세계주의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ii)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법이 없이는 범죄 없다」는 원리만은 지켜져야 한다. 형사국제법은 국제공법과 국내형법 양자의 성격을 공유하는 혼합적 성격을

12) 김주덕, 전계서, p.30.

13)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1945년 8월8일 미·영·프·소 등 전승4개국에 의해 군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45년 10월18일 베를린에서 기소장이 제출되었고 45년 11월20일부터 46년 8월31까지 총403회에 걸쳐 심리를 행했는데 최종판결은 46년 9월30일에 선고되었다. 모두 12명의 피고에게 교수형, 31명에게 무기징역, 4명에게 10년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사형 집행은 46년 10월16일 집행되어 확장했다. 유대인 학살주범 아이히만은 60년 5월11일 브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61년 12월5일 사형이 선고되었고 62년 5월31일 집행되었다.

가지고 있다. 형사국제법은 국제법의 한 분야이고 국제형법은 국내형법의 한 분야에 속한다고 본다.

프라스키(Plawski)는 국제형법은 국제적 요소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 국가의 형사재판권을 결정하는 국내법의 한 분야로 보았는데 이때의 국가적 요소는 범죄지, 범인, 그리고 피해자의 국적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한 법규범의 제정은 각국의 국내법적 입법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국제형법은 형법의 장소적 효력에 관한 국내법에 불과한 것으로 협의의 국제형법 또는 형법 적용법이라고 한다.¹⁴⁾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형사국제법이 아니고 국내형법과의 관계에 있어 국제형법에 관한 것으로 국내 형법과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또는 국제형법의 법역이나 보호법익의 범위, 나아가서 국제형사법 일반에 관하여 국내형법과의 구별되는 특성을 부각하여 학문적 영역을 확정하는 것이 국제형법학의 임무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제형법과 형사국제법을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의문이 있다.

Ⅲ. 국제조직범죄의 특성과 현황

1. 국제조직범죄의 의의 및 특성

사회구조와 경제관계가 복잡·다양하게 변화됨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역기능으로서의 범죄의 양상과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자연범죄 즉 절도, 강도, 강간, 살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근세초기 관료제 사회에서는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가¹⁵⁾,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교통기관의 발달로 인한 교통사범 및 컴퓨터

14) 김주덕, 전계서, p.30.

15) 16C-18C에 이르는 동안 유럽각국은 중앙집권화되면서 극단적인 왕권절대주

범죄, 항공기, 핵물질, 환경범죄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는 산업화 정보화로 인해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범죄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 범죄의 수법 또한 첨단화 경향을 띠고 있다.

조직범죄(organized Transnational Crime)에 대한 정의는 어떤 목적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조직범죄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업체의 이름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감행하는 단체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보고 있으나¹⁶⁾ 1) 인터폴에서는 일반적으로 힘, 영향력,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조직에 의한 지속적인 범죄활동으로 정의하고 2) FBI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적인 구조를 갖고 그 기본적인 목적이 폭력, 공무원 매수, 뇌물공여, 공갈 등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금품을 획득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행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정의한다. 3) 범죄학자들은 대체로 조직범죄는 상당한 대중적 수요가 있는 불법 및 합법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득 및 권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직된 지속적이고 위계를 지닌 구성원들의 비이념적 사업이라고 하면서, 그 개념에 있어 특성을 ① 불법적 활동을 통한 이득의 추구 ② 지속적인 조직적 위계의 유지 ③ 무력이나 위협의 사용 ④ 범집행으로부터 면책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4) 우리 형법에서는 제114조 1항에서 범죄단체조직이라는 제목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는 그 목적인 죄에 정한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

의(Absolutism)을 취하면서 관료주의(Burocracy)와 상비군(Standing Army)에 의해 절대권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관료제가 확립이 되었는데 왕의 대관과 같은 입장에서 관료들의 부정이 극심했다.

16) 김주덕, 전계서, p.284.

17) 경찰청, 국제성 범죄수사, 1996. p61.

함으로서 조직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폭력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를 벌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1) 인터폴(organized International Crime Group)에서는 자신들의 금전적,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지속적인 불법 활동을 자행하는 자들의 집단이나 조직체(Any enterprise or group of persons engaged in continuing illegal activity which has as its primary purpose the generation of profits irrespective of nation boundaries)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는 이러한 조직범죄가 국제적인 연계성을 지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제활동에는 불법적 마약 거래를 위시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한 인신매매, 다양한 물품의 대규모위조, 불법적 통화조작, 대규모 해상보험사기, 밀수, 불법무기 거래, 야생동물 밀매, 국제 장기 밀매, 산업폐기물 처리, 예술품 불법거래 그리고 테러 같은 것이 있으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새로운 유형의 조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1977년 조직범죄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미국 연방수사 기관들 사이에 서 합의한 조직범죄의 개념은 「자기 보전 능력이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규율을 지닌 개인 또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금전적이나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불법한 수단을 행사하고, 뇌물 교부 또는 부패 행위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보호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조직」 이라고 했다.¹⁹⁾

18) 형법 제11조①은 범죄단체를 내부적인 조직을 갖춘 특정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7-8년전에 범죄와의 전쟁으로 많은 조직범죄의 두목급들이 검거되어 실형을 복역한 뒤 몇년전부터 만기출소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재조직할 가능성이 많다.

3) 일본에서는 조직 범죄가 주로 폭력단에 의해 행해지므로 폭력단 범죄라고 하는데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이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⁰⁾

조직범죄는 조직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들의 생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차원에서의 조직이론과 법적 차원에서의 범죄이론을 동시에 고찰해야 하므로 범죄사회학, 형사정책, 법률학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마약범죄, 조직폭력사범, 불법무기거래사범, 테러행위, 도박, 매춘, 공직자 매수행위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조직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²¹⁾ ① 비이념적(non-ideological)인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금전과 권력의 획득을 추구한다. ② 국제조직 범죄집단은 3개이상의 영구적 지위가 있는 수직적 권력구조를 지닌 위계적(hierachical)조직이다 ③ 제한되거나 배타적인 구성원의 자격을 요구하며 ④영속성이 있고 ⑤ 조직의 목표수행과 존속을 위해 불법적 폭력과 뇌물을 사용하여 ⑥ 대외접촉과 뇌물전담, 돈세탁 담당, 집행자 등으로 전문화·분업화된 조직체계를 갖고 있고 ⑦ 특정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상태를 유지하며 통제는 한사람의 수중에 달려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이 협의체로 운영되는 수도 있다. ⑧ 규칙과 규제에 의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즉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범죄활동을 하므로 지휘계통이 확립되어 있다. 조직의 규율을 어기거나 이탈하면 가혹한 제재를 받는다. 조직원의 임무분배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전달되는데 두목의 지시를 받는 정도, 상납방식, 두목의 리더쉽, 전체규모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⑨ 조직원은 범죄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실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우범자의 경우와 달리 조직 범죄의 용의자를 찾기가 어렵다. ⑩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종의 사

19) 경찰청, 전계서, p.62.

20) 大谷實, 刑事政策講義, 1987, p.374.

21) 김주덕, 전계서, p.288.

회보장을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조직원들을 결속시키고 명령에 순종시킨다. 이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힘은 외부 공동체 사회의 법질서에 부적응, 조직에 대한 충성심, 혈연·지연, 범죄조직으로부터 얻는 경제력, 직업화 등의 요인도 있으나 이들 조직의 특수한 생리, 예컨대 어떤 명령에도 따르겠다는 용기라는 감정관념, 조직에 대한 소속감의 공유 등은 형법상의 공동가공의사를 넘어 공동심리작용을 기초로 결속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범죄들이 대체로 광역적인 조직 범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i)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범죄의 기동성이 강화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범해지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며 ii)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수요를 가지게 되었는데 마스크의 발달로 도시와 지방의 문화적 모방성의 전파 때문에 대부분이 향락산업, 불법적인 서비스를 전국 차원에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고 iii) 범행 후 도피장소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해져서 범죄지가 전국단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들 조직 범죄들이 선호하는 범죄로는 각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독일에서는 무기거래와 무기밀수, 매춘알선, 인신매매, 불법도박과 사기도박, 보호에 대한 수수료 강탈, 불법적인 직업알선과 고용, 외국인의 불법유입, 상표위조, 금괴밀수, 보조금 사기와 입장수수료 횡령, 수표나 신용카드의 위조와 남용, 위조화폐의 제작과 유포, 고가 자동차 밀매 및 화물차 컨테이너 그리고 선박을 이용한 수화물 밀매, 보험사기, 주거침입절도, 특수폐기물의 불법처리와 과학기술의 불법전용 등이다. 우리의 경우도 점점 이와 같은 선진화의 양상들을 띠어가고 있다.

2. 국제조직범죄의 현황과 실태

현재 세계 각국 국제조직범죄 즉, 초국가 범죄조직들 중 우리 나라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요조직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야쿠자²²⁾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표적 국제범죄 조직인 야쿠자는 18세기 중반 보부상 집단인 「테끼아」와 전문도박 집단인 「바쿠토」를 모체로 하여 20세기초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자와 결탁하여 급성장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불안을 틈타 전국적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야마구찌 구미(山口組), 안가와카이, 쿠렌타이, 스미요시카이(吉會) 등 3,300여개 조직에 90,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약 밀매, 총기밀매, 도박장개설, 청부폭력,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 특히 우리 나라와 연계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92년 3월 일본정부가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한 후 25개 조직을 지정하여 폭력단으로 지목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자금활동 위축으로 해산하는 조직과 조직이탈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② 기존의 공갈·협박, 도박 등에 의한 자금획득이 어려워지자 도산기업에 관여하거나 위장기업을 경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변경했으며 ③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동남아, 미국, 호주 등지로 진출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위장기업형태의 해외 거점 마련을 시도하는 등 국제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④ 일본 야쿠자 조직원의 상당수가 한국내 관광과 조직원 대회를 빙자하여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⑤ 재일교포·두목 급 야쿠자들이 국내연고를 이용하여 부산 등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호텔 업계 진출을 모색하는 등 국내에서의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범죄조직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2) 중국의 삼합회(Triad)와 흑방(黑幫)²³⁾

이들은 청나라시대 洪門이 19세기말 哥老會, 三合會, 天地會 등의 비밀결사조직으로 이어졌다가 20세기에 와서 靑幫, 線幫, 紅幫 등 기업형 폭력 조직으로 변했으나 1949년 공산정권의 수립과 국민당의 패주로 흥

22) 김주덕, 전계서, p.294, 경찰청, 전계서, p.63.

23) 경찰청, 전계서, p.64.

콩과 대만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1978년에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한 후 범죄단체가 폭발적으로 생겨났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드는 소위 라우망(流民)계층의 유입, 홍콩, 대만의 대중국 투자 급증, 그리고 대만과 대륙간의 인적교류확대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급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마카오와 대만에 기반을 둔 중국계 범죄조직으로 50여개의 방계조직을 거느리고 10만여 화교가 그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세계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마약과 총기밀매, 청부폭력, 불법이민 알선, 위조지폐의 유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흑방은 13만여개의 군소 조직에 46만 정도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바 이들중 靑龍幫, 十兄弟, 중국 동북 3성에 기반을 둔 眞龍幫, 산둥의 海泉幫, 강남의 臥龍幫, 하북의 改口會 등은 큰 조직들이고 권총과 기관단총의 무장화력을 갖추고 마약, 매춘, 인신매매, 위폐제작, 무기밀매 등을 업종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남아프리카 등지에 거점을 마련하는 등 국제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동남아국가인들의 불법 입국주선, 중국교포 및 대만을 통한 마약밀매, 우리 나라 제품의 중국 밀수출과 중국 농수산물의 국내반입 등에 개입하고 있다.

3) 러시아 마피아²⁴⁾

소련의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공권력 이완과 경제질서의 문란을 틈타 정부재산의 민간불하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으로 폭발적으로 조직범죄가 늘어났는데 이중 러시아 마피아라는 신생 경제마피아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들을 카라카스지방 출신으로 구성된 「체첸그룹」 등 모스크바내 약 35개단체, 전국적으로는 5700여개 조직에 47만명의 조직원이 활동중인데 일부조직의 경우 미성년 전투대원 등 10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구 KGB, 군출신 요원도 있고 구 공산당원 관료가 조직의 간부로 활동중이기도 하다. 이들은 위조지폐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국가재산의 절도 및 착복, 원

24) 경찰청, 전계서, p.65.

조물자의 횡령, 민영화 대상인 호텔·점포의 지분참여로 무역 회사 등 각종 기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레스토랑, 시장상인, 합작기업 등 회사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이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으며 15만점의 총기, 30만개의 수류탄, 미사일발사기를 보유하고 있어 정치적 테러 및 암살, 인신매매, 마약과 총기밀매, 불법이민 알선, 밀수입 연계 등과 심지어는 핵물질까지 밀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미국,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이미 진출했고 최근에는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트라이어 등과 연계하여 동북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들 중 24개 조직은 미국 깡단들과 연계되어 있고, 2~3개 조직은 이탈리아 마피아와 교류하고 있다. 극동쪽에는 연해주와 사할린 쪽에 각 지역별로 7·8개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이중 홈스크 마피아가 가장 강력하며, 이들 연해주 지역 마피아들은 주로 선원증과 여권위조, 해산물과 식료품등의 밀수거래,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중고차수입·판매, 매춘, 마약밀매, 각 기업으로부터의 보호세 갈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해주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으므로 항공기, 선박 등을 이용하여 입국이 용이하므로 부산 등지를 거점으로 총기 밀반입, 밀수입, 일본밀항알선 등의 활동을 하는 등 국내 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미국내의 아시아인의 범죄조직

① 최근 수년에 걸쳐 미국에서는 베트남계의 Born To Kill, 중국계의 Hing Sing Tong On Leon Tong, 萃靑幫, 越靑幫, 일본야쿠자 등 아시아인의 범죄조직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들은 고성능 무기를 소지하고 무기밀매, 폭파, 방화, 폭력 및 마약밀매 등의 범행을 자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라 코사노스트라”라는 연합체외에 각 지역별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범죄조직이 활동중이고 특히 중국계와 베트남계 등 소수민족의 범죄조직이 활발하다. 이들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등지를 무대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잔인한 행위를 일삼으며 자국민 보호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② 미국내 한국계 범죄조직

미국에서의 한인범죄조직은 규모면이나 성격, 영향력의 면에서 다른 민족의 조직에 비해 미미한 형편이지만 최근 그 세력을 강화해가고 있는데 워싱턴 지역의 “코리안 파워” 등 우리교포 폭력 조직이 안마시술소등을 통한 매춘 및 마약밀매에 관여하고 있는데 범행 대상을 주로 한국교포로 한정하고 있어 많은 교포들이 시달리고 있다. 한국계 범죄조직의 활동은 주로 호놀룰루,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한인 밀집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Street gang 들은 살인, 폭력, 갈취, 도박, 매춘 등을 자행하는데 35개정도의 조직이 있으나 조직원이 극소수이고 주로 10대, 20대의 한인청년들이다. 현재 뉴욕과 LA에 Korean Fuk Ching, Korean Power, Korean Mafia 등 32개 조직이 활동중이다.

3) 일본계 TYJK 조직은 미국내 한인 마약조직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는데 구성원 850여명 중 15% 정도가 한국계이다. 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조기유학생으로 구성된 LA지역 LGKK 등 45개 조직은 귀국시에 마약 등을 국내로 반입할 가능성이 많아 주목되고 있다.

3. 우리나라에 있어 국제성 범죄의 사례²⁵⁾

우리 나라에 있어 국제성 범죄는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특히 국제적 조직범죄가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적 자료는 없으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개별적·조직적인 국제성 범죄는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일로에 있는데 여기서는 부산지역에서

25)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1998 통계.

발생한 국제성 범죄의 발생과 검거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1) 외사사범처리현황(경찰서별, 98년 누계)

(다음페이지 표참조)

2) 中國僑胞 密入國 事例

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 교포들이 친인척 상봉 및 관광목적으로 대거 입국,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한국에서 2-3년만 고생하면 중국에서 평생먹고 살수 있다는 배금주의가 교포사회에 만연되면서 무작정 돈벌이할 목적으로 어선을 이용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① 1995년 6월 10일 6시경 영도구 대교동 소재 남항부두로 중국 교포 11명이 소형 어선을 이용 밀입국 하는 것을 동부서 형사에 의해 검거
- ② 1995년 6월 16일 12시 30분경 한중 정기 여객선 황해호 편으로 중국 교포 34명이 우리나라 사증(VISA)을 위조한 여권을 소지 입국하다 입국 사열과정에서 적발
- ③ 1995년 10월 27일 1시 50분경 강서구 명지동 소재 동리 선착장으로 소형어선을 이용 밀입국 하던 중국교포 51명을 부산해양서 동리 어선신고소에서 검거
- ④ 1995년 10월 27일 2시경 영도구 대교동 대교선착장으로 중국교포 51명이 소형 어선을 이용 밀입국 하는 것을 부산해경에서 검거
- ⑤ 1996년 4월 5일 1시30분경 기장군 일광면 학리소재 “삼광물산”해안에서 군해상 레이더에 의해 포착된 밀입국 선박을 해군, 해경, 육군(53사단) 합동으로 중국교포 밀입국자 126명 검거(울산 해경서)
- ⑥ 1997년 2월 26일 16시경 사하구 감천항 한보부두내 세인트 빈센트 선적화물선 “가이창”호에 중국인 2명이 1997년 2월 22일 15시경 중국 대련항에서 밀승선하여 감천항으로 입항중 남외항에서 선원들에 의해 발각 검거, 안기부 감천 기록실에 신고되어 검거됨.

3) 러시아여성 매춘사건

사례 ①

◎ 일시 및 장소

- 97. 2. 28

- 중구 남포동 소재 사군자 단란주점

(부산지방경찰청, 1998.1-12월)

구분 서별	계	살인	강도	공중불기재	질도	폭력범죄	성범죄	지능범죄	과실·교통	경제사범	밀항	여권법	공문서위조	관세	출판리	향정신	의환법	기타	처리결과			
																			구속	불구속	이첩	기타
계	건	377	1	3	9	19	4	11	3	1	7	100	18	3	149	9	21	19	87	137	152	1
	명	694	2	11	17	35	5	13	3	2	7	132	34	5	364	10	26	28	113	206	363	12
중부	건	32						1			1	9			8				11	9	12	
	명	80						1			1	11			47				12	16	52	
동래	건	7					1					1			5				1	1	5	
	명	21					1				1				19				1	1	19	
영도	건	6				1						1			4				1	1	4	
	명	13				1					1				11				1	1	11	
동부	건	29			2	12	1		1			2	2	1	8				4	16	9	
	명	49			4	20	2		1			2	8	2	10				6	29	12	2
부산진	건	24			3				1			1	3		15			1	5	4	15	
	명	31			3				1			1	8		17			1	6	7	17	1
서부	건	6																			6	
	명	7													7						7	
남부	건	8										2	1		4			1	2	1	5	
	명	16										2	1		10			3	2	2	12	
해운대	건	24		1	1	2	4			1		4			11				7	6	11	
	명	95		2	3	7	7			1		4			71				17	12	66	
북부	건	28				1		1				2	1		23				3	2	23	
	명	65				1		1				2	2		59				4	2	59	
금정	건	7										1			6						6	
	명	9										1			8						8	
사하	건	9			1		1	1							6			0	2	1	6	
	명	18			3		3	1							10			1	4	3	10	1
연산	건	8					1					2			5				1	2	5	
	명	16					4					5			7				2	7	7	
강서	건	72				1					2	43	2		7		17		3	62	7	
	명	80				2					2	47	2		10		17		4	63	10	3
외사과	건	117			1		1	9		1	4	32	9		41	3		16	47	31	38	1
	명	194			5		1	11		2	4	55	13		78	3		22	54	62	73	5

◎ 피의자 인적사항(접대부)

- (1) 알렉산드리아(74.5.8)
- (2) 차냐(72.11.6)
- (3) 에리나(72.9.28)
- (4) 타야나(70.8.3)
- (5) 알리나(70.7.30)
- (6) 마가리타(74.7.31)
- (7) 라리사등 7명 검거

사례 ②

◎ 일시 및 장소

- 97. 9. 5
- 해운대구 중동소재 모호텔 307호 309호

◎ 피의자 인적사항

- (1) 에카데리나 니키수나(76.10.14생, 여)
- (2) 보다노바 유리아(76.10.31생, 여)
(상대자)
- (3) 정모 (68.10.10.회사원)
- (4) 성모 (67.7.3, 회사원)

◎ 범죄사실

- (1),(3) 피의자등은 97.9.5 밤 수영구 광안 3동 소재 파레스 관광나이트 클럽 술좌석에서 만난 것을 기화로 익일인 9. 6. 15:00경 해운대구 중동 소재 모호텔 309호에서 30만원을 받고 유희행위를 한 것임.
- (2),(4)피의자등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 309호에서 같은 화대로 유희행위를 한 것임.

4) 외국인 네다바이 사건 발생 사례

다음 사례는 지난 6.14-15 양일간에 부산·진주에서 연쇄적으로 발생

한 외국인 절도 3건에 대한 요지를 발췌한 것이다.

① 97.6.14. 17:00경 부산시 사상구 패법동 256-1번지 소재 프로젝트 옷 가게내에서 2-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랍풍의 외국인 남·녀 2명이 역대 1개 싯가 14,0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카운타에 있던 피해자 김정태(당26세)에게 지갑에서 외국돈을 보여주면서 교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금고속에 있던 일만원권 60만원을 보여주자 신권으로 골라 가지겠다고 하여 돈을 건네주는 순간 그중 30만원을 절취 도주함.

② 97.6.15 15:30-16:00경 진주시 봉곡동 인창 주유소내에서 이탈리아인으로 추정되는 흑인 2명이 엔진오일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1만원권을 받고 거스름돈 7천원을 환불하자 다시 3천원을 보태어 천원권 1만원을 주면서 만원짜리 신권으로 교환하여 달라고하여 신권으로 교환해준 뒤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100만원(만원권)뭉음 1다발을 절취도주함

③ 97.6.15 23:40경 강서구 대저 1동 소재 현대 주유소내에서 동남아풍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자 4-5명이 기름을 주유한 뒤 5천원권 지폐 두장을 주면서 만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교환해준 뒤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43만원(1만원권 43매)을 절취 도주함.

5) 지명수배 외국인 밀출국 알선책 검거 수사

◎ 피의자 인적사항

- 주거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이름 : 김모 34세, 남자

◎ 범죄사실

- 피의자는 98.2.5 16:00경 부산역 부근 소라다방에서 공범 신영선(38세, 남자), 안일제(47세, 남자), 정영효(45세, 남자)등 3명(98.3.30 전원구속)과 함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일본국으로 밀항시키기로 공모하고

- 동월 8일 1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부근에서 방글라데시인 “아쭈”(당28세)등 14명으로부터 1인당 35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14명으로부터 선수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1850만원을 선박구

입 대금 명목으로 착복하고

- 97.10월 중순 0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 시장 부근 옥호 불상의 여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 “네슈두리” 등 약 500명으로부터 1인당 350-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우선 선수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뒤 도주한 혐의.

6) 외국인 밀출국 알선조직 검거수사

◎ 검거일시

98.3.30. 07:30 - 09:00

부산 수영구 광안3동 1064번지 소재 피의자 자택

◎ 피의자 인적사항

- (1) 부산 동래구 사직동 10-23번지 시영아파트 38세, 남자
- (2) 부산 수영구 광안동 1064번지 47세, 남자
- (3) 부산 서구 남부민동 185-5번지 45세, 남자
(미체포)
- (4) 경남 통영시 이하불상 34세가량, 남자

◎ 범죄사실

- (1)(2)(3) 피의자들은 98.2.5 16:00경 부산역 부근 소라다방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일본국으로 밀항시키기로 공모하고 (1)피의자는 모집공급책, (2)(3) 피의자는 일본밀입국선박알선 등의 임무를 띠고
- 동월 8일 1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부근에서 (1)피의자는 방글라데시인 “아즘”(당28세) 등 14명으로부터 1인당 35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14명으로부터 선수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1,850만원을 (2)(3)피의자에게 선박 구입대금으로 지급.
- (4)피의자는 97.10월 중순 04: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 시장부근 옥호불상의 여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과 파키스탄인 “네슈두리” 등 약 500명으로부터 1인당 350-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우선 선수금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뒤 도주한 혐의

를 각각 받고 있음.

◎ 조치

- (1)(2)(4) 피의자는 법무부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첩(구속수사)
- 도주한 (3)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 편성 배회처인 경남 통영 일대를 중심으로 소재수사에 당하고 있음.

7) 외국인(카메룬) 달러위조 사기범 검거

◎ 피의자 인적사항

국적 : 카메룬

(1) Soume Manasse (70.3.22일생) 28세, 남자

여권번호 96-274282

(2) Etah Sylvestre Nabloire(76.8.30일생) 22세, 남자

여권번호 98-384850

◎ 범죄사실

- (1)(2) 피의자는 30일 단기비자로 99.2.4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미화 50만달러를 사취할 목적으로 대상자를 물색중 99.2.20 부산시 동구 초량동 거주 석기호(무역업, 42세, 남)에게 자동차를 수입할 것처럼 접근.
- 99.2.22 17:00 특수한 약품을 사용하여 미화 달러를 위조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동구 초량동 소재 귀빈장 여관으로 피해자를 유인
- 미리 앞뒤면에 물감을 칠해 준비해둔 진화 1달러 짜리 2장을 백지라고 속인 뒤 피해자가 가져온 진화 양면에 접촉하여 발로 밟은 뒤 머큐륨을 탄 물에 헹궈서 진화처럼 채색된 것으로 믿게하고 50만불을 가져오면 100만불을 위조해주겠다고 제의하며 사취코자하다가
- 99.2.24 11:00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 및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여 합동잠복근무중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임

◎ 조치

- 위폐 감정의뢰(국립과학수사 연구소)

피의자가 자신들이 만든 위폐라고 주장하는 1불짜리 미화 7매를 국립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감정한바 진폐로 밝혀짐.

- 구속수사예정

7) 중국에 빚 받으러 갔다가 여권 등을 강탈당한 사건 진상

◎ 고소인 인적사항

주거 :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240-74

귀금속상 33세, 남자

◎ 피고소인 인적사항

국적 : 중국(조선족)

주소 : 중국 북경성 이하불상

(1) 장 경 수 : 38년 남자

주소 : 불상

(2) 기 영 록 : 32년 남자

◎고소장 접수일자

98. 4. 1. 10:00

◎ 고소내용

(1) 피고소인은

- 97. 6 고소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100만원짜리 수표를 피고소인이 위임장을 써주면 수표발행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주겠다고 기망하고 사취

- 97.6 현금 300만원 차용 착복

-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으로 들어오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98.3.23 북경에 도착했으나 돈은 받지 못한채 3.24 합숙소에서 권총을 휴대한 폭력조직배로 보이는 피고소인 장경수를 포함한 10명으로부터 “권총 구입에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 전화를 걸어 송금을 하도록 하라”는 협박을 받고 송금할돈이 없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40만원, 시계5개(시가 총35만원 상당), 여권

1대를 강탈하고 감금

- 98.3.25 감금당하고 있던 여관을 탈출 중국공안당국에 신고 중국현지 경찰이 장경수 자택과 여관을 습격했으나 모두 도주하고 없음.

(2) 피고소인은

97.6.14 장경수의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팔짜 반지등 10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해 간후 소식이 끊김

IV. 국제조직범죄의 대책

국제적인 조직범죄를 억제하는 특별한 방안은 있을 수 없다. 국내범죄의 통제도 어려운 마당에 각국의 이해가 엇갈렸을 뿐 아니라 전면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명사회로부터 범죄를 원천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공동의 이상이다. 단독범보다도 조직범죄는 단속에 애로가 많다. 범죄조직이 사회에 계속 존재하는 한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도 조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즉 구성원의 인적사항과 활동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조직의 성격상 수괴나 간부가 처벌되지 않고서는 조직을 와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인내심을 가지고 은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을 움직이는 자금과 자금원을 차단 내지 봉쇄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오늘날 각국들이 내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인 국제조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이들 조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국가간에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범죄를 단속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수사의 전문화와 전담기구의 설치

전문화된 수사요원의 필요성이다.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사전정보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수사대상 조직의 범죄세계에서의 역할, 저지른 범죄의 유형들, 사범 처리된 사항들 등 조직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여 그들의 새로운 동향에 적합한 수사기법을 능동적으로 개발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공조를 위해 미국식 조직범죄합동수사본부와 유사한 상설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선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관계, 시·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험을 결합하여 조직적으로 수사에서 재판, 형의 집행단계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

2. 과학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

국제조직범죄는 한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이 각 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조직의 계보, 구성원들의 동향, 비호 세력과의 관계, 조직원의 신상 및 조직내에서의 위치 뿐 아니라 기존조직의 와해와 새로운 조직의 결성, 조직의 분화와 활동, 국제적인 연계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정리하여 이들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적된 자료는 전산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관계 자료에 대한 집중 관리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각 기관간의 정보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간에도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3. 적극적인 수사자세

조직범죄의 구성원이 검거되었을 때도 국제조직이 아닌 개인적 범죄 등으로 축소자백 할 가능성이 많고 이를 통해 본체에 접근할 기회를 놓치는 수가 많은데 범행의 수법이나 가담자의 성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범죄의 성격을 파헤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범죄조직을 비호하는 주변세력을 밝혀야 하고 이들 조직의 자금상태를 동시에 규명해야 한다. 일단 범죄사실이 드러나 조직원을 철저한 추적수사로 반드시 검거할 것이며 조사시에도 조직의 실체, 조직내의 위치, 범행동기, 수법 등 범죄와 관련한 제반문제 등을 확실히 조사해야 하며 증거확보를 보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4. 피해자 및 증인 보호 대책의 강구

조직범죄의 경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나 피해자가 조직원들에 의해 보복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특히 이들 증인은 보복이 두려워서 진술거부나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그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신변을 보호한다든지 이들의 신상이 조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증언채취에도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 법관 앞에서의 비밀증언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조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에 있어서는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한 자 대해 보복목적의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하고, 혐의자들이 목격자나 그 가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인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제도는 i) 피해자구호법에서 고소·고발인 또는 증인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ii)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변안전을 취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i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구성원, 자금 무기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조직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범죄조직의 자금원과 범행도구인 무기를 완전히 근절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두목 간부, 조직원 모두인데 이들이 일단 검거되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습성, 악성, 사회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범죄성은 적더라도 행동 대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교사자, 소속범죄 집단, 집단에 가입하게 된 경위, 가입후의 활동 상황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들이 자백할 때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특혜도 베풀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원 상호간에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면회자의 성분이나 동향도 살피고 또 조직 범죄인에 대한 교정 교화의 기법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

범죄예방이나 진압은 사회전체가 참여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조직범죄의 피해를 인식시키고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신고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할뿐 아니라 시민들도 건전한 생활을 통해 이들 조직과 접근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전과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 사회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회가 포용해야 할 것이다. 출소자들은 대개 경제적 빈곤과 취업곤란이 겹쳐서 생활기반을 마련치 못해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는 이들을 선도하는 일에 최선

을 다해야 한다. 범죄의 발생에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기 때문에 사회도 책임이 있다.

V. 결 론

국제형법이 제정되지 않은 입장에서 국제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국제관계법이나 조약 협정 및 국내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 성격의 범죄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국제간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국제범죄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내법에서와 같은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입장이 아니라 UN이나 국제사법법원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국제성 범죄들을 망라하여 이론적인 정립을 한 후 국제간에 철저한 공존체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조직범죄의 생태는 국내 조직범죄와 다를 바 없기는 하다. 국제범죄라 하지만 조직의 본부나 주된 범죄지가 일정한 국가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범죄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범죄 수사의 어려움일 것이고 재판은 국내형법에 따르면 될 것이다. 최근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범죄 조직들의 중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들이 선진국형 범죄기법으로 우리 나라에 접근해올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수사요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관계국가의 수사기관들과 충분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금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국제적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출세하려는 자들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범그룹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인데 잘못하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시아계 조직 범죄 대책회의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으나 조직범죄로 인해 각국이 입고 있는 피해는 심각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제간의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므로 범죄에 관한한 이미 국경 없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세계화·국제화라고 하면서도 국경의 개념이 범죄처벌에 장애가 되어 왔던 현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범죄진압이라는 인류공동의 관심을 인류문명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범죄 없는 살만한 지구촌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도 개별국가간의 이해를 떠나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의 소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